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45-8 3층 | 전화 02-773-5158 | 전송 02-773-5158

E-mail : genocide2002@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genocide.or.kr>

- 문서번호 : 제08-외205호(2008년 12월 11일)
- 수 신 : 각 언론사
- 참 조 : 진실화해위 및 과거사관련위원회 출입기자
- 발 신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 제 목 : [논평]주요일간지 기사 및 사설에 관한 학살규명범국민위 논평 (3쪽)
- 문 의 : 사무처 02-773-5158 (김증식 사무국장)

1. 올바른 역사정립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이하 학살규명범국민위)는 100만 민간인학살의 진실을 밝혀 유족들의 통한의 세월을 위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우리 사회가 인권과 평화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학살규명범국민위는 12월 9일 10일 조선동아일보 등 주요일간지에서 과거사관련위원회의 민간채용직원 중 관련분야 경력과 시민사회단체 경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끝)

주요일간지 기사 및 사설에 관한 학살규명범국민위 논평

12월 9일과 10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지금까지 과거사관련위원회와 민간채용직원중 상당수가 관련분야경력이 전혀 없는 시민사회단체관계자로 채워져 있고 그들의 경력사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을 들어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의 사설과 기사 등을 일제히 공개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조사관들에 관련분야경력이 없다? 그럼 이렇게 묻겠다. 과거에 발생한 이 사건의 전문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관련 분야는 어떤 것인가? 과거청산을 위해 과거사관련위원회들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누가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했는가? 정부? 입법부? 사법부? 경찰? 국방부? 누가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했는가? 그렇다 당신들이 말하는 시민사회단체관계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편견을 맞서기면서 사건을 조사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이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된 사람들이다.

그럼 누구를 채용하여 이 과거청산작업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과거청산작업은 기존의 국가기관의 업무와는 차원이 다른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고려하여 과거사관련위원회들은 그들을 공개채용 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 활동하였던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가지고 편향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이것은 과거 한국전쟁전후시기에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처럼 과거의 활동을 가지고서 무고한 민간인에게 빨간색을 칠해 적법절차 없이 학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2008년 대한민국의 주요한 언론사리는 곳에서 할 이야기인가? 이제는 제발 이런 색안경은 벗고 맑은 하늘을 볼 때가 아닌가?

이와 함께 조사결과가 편향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하는가? 지금 과거사관련위원회에서는 각종의 사건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있다. 그럼 그 진상규명결과를 가지고 분석하여 주장과 논리를 펴야지 분석결과 혹은 자료도 없이 추측과 억측으로 말하는 것은 술주정꾼의 술주정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기사와 사설로 과거사관련위원회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과거로 회기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까지 과거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원하는 피해자, 유족, 관련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뜻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이며 장차 대한민국에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말보다 지난 12월 8일 봉행된 '2008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추모 전국합동위령제'에서 한국사회 처음으로 발표된 '민간인학살 생존자, 피학살자 유가족 그리고 진실 추구자 인권선언' 일부 내용을 인용하겠다.

제8조 학살 피해자는 누구든지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등의 활동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9조 학살피해자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그리고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진실규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정당한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폐기 또는 은폐유기한 자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008년 12월 11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이이화 김영훈 임태환

운영위원장 이창수